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적정노무비 산정 및 지급 등 》

■ 윤종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56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윤중오의원 대표발의(제2218056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4. 검토의견	3
가. 적정노무비 산정 및 지급 등 (안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신설)	3
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 구분 작성 (안 제22조제7항 등)	15

I. 윤종오의원 대표발의(제2218056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종오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4. 2.

다. 회 부 일 : 2026. 4. 3.

2. 제안이유

건설현장에서는 다단계하도급 구조가 고착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발주자가 책정한 노무비가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치며 중간에서 삭감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건설노동자가 수행한 노동의 가치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임금삭감·임금체불 등 노동조건 악화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구조는 건설노동자의 생계 불안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숙련 기능인력의 이탈과 건설산업 전반의 품질 저하 및 안전 저해로 이어질 우려가 큼.

이에 건설근로자에게 직종별·기능별로 적정하게 산정된 단위 임금 수준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도급 계약 단계에서부터 노무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여 도급 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거나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간착취를

방지하여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직종별·기능별 단위 임금수준 이상의 적정노무비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4 신설).

다. 적정임금제도는 공공발주 건설공사 현장부터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건설현장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함(안 제22조의5 신설).

3. 검토의견

가. 적정노무비의 산정 및 지급 등(안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신설)

개정안은 건설공사에 ‘적정노무비’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로 적정노무비를 산정하여 고시하고, 공공공사 및 일정 금액 이상 민간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 등에게 적정노무비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2조의4(적정노무비의 산정 및 지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의 적정한 노무비 수준(이하 “적정노무비”라 한다)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로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정노무비를 산정하여 고시하기 전에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 및 건설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의 의견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적정노무비의 산정을

현행	개정안
<신설>	위한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으며, <u>적정임금 산정방식의 적정성, 조사결과와 통계적 검증 등을 위하여 노·사·정이 참여한 자문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u>적정노무비 이상 지급의 기준과 대상, 적정노무비 산정 및 절차, 자료요청의 절차와 방법,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2조의5(적정한 노무비의 지급) ①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제34조제9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에게 적정노무비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u> <u>1. 국가</u> <u>2. 지방자치단체</u> <u>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u> <u>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이하 “특수목적법인”이라 한다)</u> <u>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u>

현행	개정안
	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적정노무비 이상을 반영한 노무비 총액을 공사금액에 반영해야 하고, 적정노무비가 현장 건설노동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 건설공사는 임시·일용 근로자 중심의 고용체계, 다단계 하도급 구조 등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수주를 위한 가격경쟁이 노무비 삭감을 통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음.

노무비 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수준의 저하로 이어져 건설근로자 인력 부족 문제를 발생시키는 한편, 공사비 절감을 위한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및 불법 재하도급을 유도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공사에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된 바 있음.

구체적으로, 2017년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은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당초 공공발주자가 정한 금액

대로 지급될 수 있는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하되, 산업영향·국가재정 등을 감안하여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였고,¹⁾

2020년에 수립된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0~2024년)」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공공공사부터 직종별로 시중노동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액 지급 의무를 법제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함)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²⁾

2021년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에서는 공공공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민간공사는 민간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적정임금 지급·확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법」의 개정을 통해 적정임금제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³⁾

1)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2017.12.12.),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0~2024년)」, 관계부처 합동

3)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2021.6.),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 2021년 적정임금제 법제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제4조(권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 등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고용관리 개선
2. 고용안정
3.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4. 복지증진
5. 적정 수준의 임금 지급

제7조의6(적정한 임금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적정한 수준의 노무비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7의2. 건설근로자 직종별·기능별 노무단가의 조사·연구 <신설>

「건설산업기본법」(안)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② (생략) 이 경우 건설공사에 필요한 도급금액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의4(적정한 노무비 지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에게 적정 수준의 직종별·기능별 단위 임금수준(이하, ‘적정노무비’라 함)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적정노무비를 산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게 적정노무비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를 통해

적정노무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건설근로자 노무비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주,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3항에 따른 적정노무비 이상을 반영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무비를 공사금액에 반영해야 하고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관리해야 한다.

⑥ 제2조제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4호 각 호의 공사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한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적정노무비 이상 지급의 기준과 대상, 적정노무비 산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시정명령 등)

13. 적정노무비 미지급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자료: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2021.6.,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참고2 적정임금제 법제안

또한, 2025년에 수립된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에서는 제4차 기본계획의 적정 임금 보장체계 구축 과제에 대하여 적정임금제 도입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으로 제도 도입이 지연된 것으로 평가하고,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2021년) 마련 후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을 과제로 하고 있음.⁴⁾

4)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 관계부처 합동

【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중 적정임금 관련 추진 과제 】

V. 추진 과제

3. 기본적 근로여건 보장

◇ **적정 노무비 확보**, 장기근속 유인 확대, 퇴직공제금 보장성 강화, 불법하도급·임금체불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1] 일자리-소득 보장 연계 강화

① 체불 사전 예방 관리 실효성 제고

○ **(적정임금 반영)** 건설공사비에 근로자의 임금이 적정수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검토

－ 공공공사 입찰에 있어 총공사비에 적정 수준의 노무비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 검토('26년)

－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마련('21년) 후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추진 상황 점검 및 추진 여부 검토('26년~)

＊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원·하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보장하면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자료: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관계부처 합동) 중 발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고 건설사업자단체 및 노동조합 연합단체의 의견을 들어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⁵⁾별 적정노무비를 산정하여 고시하도록

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관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기능등급별 구분·관리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관리 업무(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안 제22조의4),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지분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민간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적정노무비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22조의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관리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건설근로자로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
2. 다음 각 목의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전기공사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소방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제외한다)
 - 가. 「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별 등급은 별표 1에 따른 통합 직종(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직종으로서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적용되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해야 하는 직종을 직무내용이 유사한 것끼리 통합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관리한다.

③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기능별 등급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서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경력(「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기간,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등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자격 기준의 충족 여부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건설공사와 관련된 기능장, 산업기사 및 기능사로 한정한다)의 취득자일 것
 -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라목에 따라 가목의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자에 갈음하여 건설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일 것
3. 건설 분야의 교육훈련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 또는 훈련의 이수 여부
 - 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교육훈련
 -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
4.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에서 주최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

④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별 등급은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및 특급으로 구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능별 등급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이는 종전에 추진되었던 ‘적정임금제’를 ‘적정노무비 제도’라는 명칭으로 도입하려는 것으로,

국가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로 적정한 노무비 수준을 제시하고, 적정노무비 이상의 임금 지급을 공공공사에서부터 민간공사까지 순차적으로 확대⁶⁾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제고하고, 직업전망 제시를 통해 건설현장에 국내 건설근로자의 유입을 확대하며, 공사비 절감을 위한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및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동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정부에서는 ‘건설업 적정임금제 제도화 및 기능등급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2027년까지의 연차별 이행계획을 진행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건설근로자 임금 현실화 방안”에

6)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5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대한 연구용역⁷⁾을 실시하였고(고용노동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1월
까지를 기간으로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 연구”⁸⁾를 수행 중이며(국토
교통부),

2026년 하반기에는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 전문가,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2027년에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
인바,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노·사, 전문가, 유관기관의 의견과 이견 해소
방안 및 구체적인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국토교통부는 적정 임금의 기준 마련은 건설근로자 실지급 임금 정보
수집과 기능인등급제 활성화, 적정 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을 연계
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추진, 관계
부처(재정경정부,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등) 협의를 통해 적정임금제 도입

7) 동 연구용역은 건설업 현황분석, 2018년~2019년의 시범사업 효과분석, 건설업 외국인 고용
현황 및 이슈, 건설근로자 임금 현실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8) 동 연구용역은 시범사업 시행방안 마련 및 성과 분석, 국내외 적용 사례 연구, 적정 임금 기
준 산정방법 및 결정절차 검토,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나,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적정노무비 산정 기준과 적용 대상 건설공사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대한건설협회는 ①인건비를 상승시키는 적정임금제가 도입될 경우 건설사업자 입장에서는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타 부분의 비용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 또다른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정 공사비’ 보장제도가 우선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고, ② 건설근로자의 임금은 타 산업 대비 오히려 높은 수준⁹⁾¹⁰⁾으로 적정임금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어려워 현재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공정·숙련도 별로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건설기능인 등급제’가 우선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9) 【산업별 상용/임시일용근로자 근로시간 및 임금 비교】

산업 분류	근로시간(시간)		월평균임금(원)		150시간 환산 월평균임금(원)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전체	165.4	90.6	4,889,948	1,871,449	4,434,657	3,009,022
제조업	174.6	104.4	6,048,024	2,070,405	5,195,897	2,974,720
건설업	168.2	95.4	4,571,035	2,616,432	4,076,428	4,113,887

※자료: 대한건설협회[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2026.1. 기준)]

10) 노동계에서는 건설근로자의 ‘일급’이 타 산업 근로자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건설근로자는 날씨 등의 영향으로 1년 내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근로일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코 임금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임.

(정동관, “건설근로자 임금 현실화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26.2. pp.79.-80.)

아울러, ③상대적으로 경영자금이 열악한 중소건설업체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생산성이 높은 숙련된 근로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 신규 근로자의 진입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고, ④미국의 경우 적정임금제 도입으로 공사비가 약 10~40%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¹¹⁾ 대책사업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①건설업보다 임금 수준이 낮은 대다수 산업에서 적정임금제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 상승을 요구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②근로자 임금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간 합의로 결정되는 것으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 자유를 제약하고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③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노무비가 70%이상 차지하고 있어 적정임금제 도입으로 증가된 공사비용이 국가예산 및 분양가 증가로 이어져 결국 대다수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1) 【미국 PW적용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현황】

연구자	공사비 증가	비고	연구시기
Fraundorf, Farrell & Mason	26.1%	공공 vs 민간 공사비 비교	1984
Richard Vedder	16%	학교 리모델링	1999
Dunn, Quigley & Rosenthal	9~37%(23%)	공공 주택	2005
Paul Kersey	12.5%	39%(임금)를 공사비로 환산 $39\% \times 31\% = 12.5\%$	2007
Glassman 등	9.9%		2008

※ 자료: 대한건설협회[출처: Prevailing Wage 제도 도입 논의에 대한 소고(20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 구분 작성
(안 제22조제7항 등)

개정안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도급금액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 ⑥ (생략) <u><신설></u>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도급금액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고 한다)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u>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	⑧ ----- ----- ----- ----- ----- ----- ----- -----

현행	개정안
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u>도급금액 산출내역서</u>(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u>도급금액 산출내역서</u>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생략)	----- -----<u>산출내역서</u>----- ----- ----- -----<u>산출내역서</u>----- ----- -----.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현행법 제22조제2항¹²⁾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하역금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 제25조¹³⁾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1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사항으로 도급금액, 공사내용, 공사착수 및 공사완성의 시기 등과 함께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서 공사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공사원가계산을 할 때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구분된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며,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¹⁴⁾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 8의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9.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2. 당해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3.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4.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5.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4)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5조(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6조(작성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사원가계산서 양식 】

공사명:		공사기간: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순공사 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총원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자료: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

또한,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현행법 제22조제3항15)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¹⁶⁾는 공사명, 공사장소, 착공 및 준공예정 연월일, 계약금액 등과 함께 현행법 제88조제2항 및 현행법 시행령 제84조제1항¹⁷⁾에 따라 산출한 노무비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15)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16)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별표와 같다.

17)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 사 명 :
2. 공사장소 :
3.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4. 준공예정년월일 : 년 월 일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노무비¹⁾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일금 원정)
- 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2항, 동시행령 제8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노임
6.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7. 선 금 : 일금 원정(계약 체결 후 00일 이내 지급)
8. 기성부분금 : ()월에 1회
9.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10.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연동을 위한 기준 비율 : %
*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
11.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 % 원정	
		() % 원정	
		() % 원정	

12. 지체상금율 :
13.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14. 물가변동 적용기준 : 품목조정률 ☐, 지수조정률 ☐
15. 기타사항 :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2.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3.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1부

의
아
는

수 급 인

주소

성명 (인)

※자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고시) 별표

*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은 기재 생략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

7.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건설사업자가 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노무비를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도급금액 총액(노무비+재료비+경비 등) 범위 내에서 업체의 기술력·인력·장비 동원의 효율성 등에 따라 구분 없이 집행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이같은 사례들로 인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노무비가 건설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된 산출내역서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노무비가 도급계약 체결 당시 산출된 내역대로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안 제22조의4(적정노무비의 산정 및 지급 등) 및 제22조의5(적정한 노무비의 지급)의 적정노무비 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적정 수준 이상의 노무비가 산출내역서에 명시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산출내역서 작성 의무화를 통한 노무비 등의 구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 동의하나, 의무화되는 공사의 범위는 적정노무비 제도 도입 방안과 연계하여 하위 법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